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06년 3월 7일

경제투자위원회

I. 심사경과

1.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06년 2월 27일 경기도지사
2. 회부일자 : 2006년 2월 27일
3. 상정일자 : 제209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제1차 경제투자위원회(2006. 3. 7)
안건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의결

II. 제안설명의 요지 : 생략(제안설명자 : 한석규 경제투자관리실장)

1. 제안이유

- 도시가스보급이 저조한 지역의 도시가스 공급시설 확충지원을 위해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의 용자지원대상에 도시가스사업자를 추가하고,
- 관계법령의 개정 및 폐지됨에 따라 달라지는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려는 것임

2. 주요골자

- 가. 「도시가스사업법」에 의한 일반도시가스사업자에게는 중소기업육성기금을 용자·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2조, 제3조, 제5조 및 제16조)
- 나. 기금의 관리·운용과 관련한 업무위탁·위임기관에 보증기관 및 시·군을 추가함(안 제6조)
- 다. 관계법령의 개정 및 폐지내용을 조례에 반영함(안 제1조, 제2조, 제3조 및 제16조)

3. 전문위원 검토의견

(1) 개정배경

- 도시가스는 상대적으로 이용이 편리하고 비용이 저렴하여 에너지로서의 선호도가 높아 '05년 12월말 현재 도내 도시가스 보급률이 77%에 달하고 있으나
- 수요가 적어 채산성이 떨어지는 지역의 경우 도시가스사업자의 경영부담과 비용증가에 따른 요금상승 우려 등의 이유로 설치·공급을 거부하여 도시가스 보급 확대에 어려움이 있는 실정이므로
-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지원대상에 도시가스사업자를 추가하여 소외지역의

도시가스 보급·확대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임

(2) 조문내용 검토

□ 「중소기업육성자금」에 대한 자금지원 대상 확대(안 제2조, 3조, 16조)

- 현행 도시가스보급이 저조한 지역의 도시가스 공급시설 확충지원을 위해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의 용자지원대상에 도시가스사업자를 추가하여 도시가스사업자의 부담을 줄이고, 도시가스 보급 확대를 통해 지역주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지역간의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 보여지며,

□ 기금관리·운용 기관의 확대(안 제6조)

- 기금의 관리·운용과 관련한 업무위탁·위임기관에 보증기관 및 시·군을 추가한 것은 기존 조례의 다른 조항(제19조)과 내용이 다른 것을 바로잡은 것이며,

□ 기타 조문내용 정비(안 제1조, 제2조, 제3조 및 제16조)

- 동 조례와 관련된 「중소기업의 구조개선과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의 폐지('05. 3. 1) 및 법령의 개정에 따라 변경된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고, 「경기도 조례 등 용어의 표준화 기준」(2005. 1. 1)에 의거 일부 조항의 오기 및 중복내용을 바로 잡아 조문을 정비한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4. 종합검토 의견

- 중소기업육성기금 지원대상에 도시가스사업자를 추가하고, 전반적인 조문정비를 통해 내용적으로 적절하기에 조례개정에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나,
- 도시가스사업자가 지원대상에 추가됨에 따라 사업시행에 따른 규칙개정, 사업계획 수립 등 후속조치를 신속히 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

Ⅲ.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Ⅳ. 토론요지 : 생략

Ⅴ. 수정안의 요지

가. 제안이유 및 제안자 : 2006. 3. 7 이해문 의원

나. 수정사유

-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용자대상에서 실업대책과 관련된 지원근거를 삭제하려 하였으나 그대로 존치하여 고용창출을 위한 사업 및 실업자의 직업훈련을 위한 지원을 지속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 조례의 문구를 관련규정과 전후 연관관계를 고려하여 명확히 규정하고자 함

다. 주요골자

- 제2조 제12호 “체인사업자”를 “우수체인사업자”로하고, 제22호는 현행대로 하고, 제23호를 “도시가스사업자라 함은 「도시가스사업법」 제2조 규정에 의한 일반도시가스사업을 하는 사람을 말한다.”로 신설하고,
- 제5조 제7호는 현행과 같이 하고, 제8호를 “ 「도시가스사업법」에 의한 가스공급시설 중 배관 및 정압기시설의 설치 비용에 대한 용자”로 신설하고,
- 제16조 제16호는 현행대로 하고, 제17호는 제18호로 변경하고, 제17호에 “ 「도시가스사업법」에 의한 일반도시가스사업을 하는 사람”으로 신설한다.
- 제18조의 시장·군수를 “시장·군수(이하 “자금평가 기관”으로 한다)”로 수정한다.

VI. 심사결과 : 수정가결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제출연월일 : 2006. 3. 7

제 출 자 : 경제투자위원장

수정이유

-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용자대상에서 실업대책과 관련된 지원근거를 삭제하였으나 그대로 존치하여 고용창출을 위한 사업 및 실업자의 직업훈련을 위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 조례의 문구를 관련 규정과 전후 연관 관계를 고려하여 명확히 규정하고자 함

주요골자

- 제2조제12호 “체인사업자”를 “우수체인사업자”로하고, 제22호는 현행대로 하고, 제23호를 “도시가스사업자라 함은 「도시가스사업법」 제2조 규정에 의한 일반도시가스사업을 하는 사람을 말한다.”로 신설하고,

- 제5조제7호는 현행과 같이 하고, 제8호는 “「도시가스사업법」에 의한 가스공급 시설 중 배관 및 정압기시설의 설치 비용에 대한 용자”로 신설한다.
- 제16조제16호는 현행대로 하고, 제17호는 제18호로 변경하고, 제17호에 “「도시가스사업법」에 의한 일반도시가스사업을 하는 사람”으로 신설한다.
- 제18조의 시장·군수를 “시장·군수(이하 “자금평가 기관”으로 한다)”로 수정한다.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 제1조의 “중소기업”을 “중소기업 등”으로 하고
- 제2조제12호 “체인사업자”를 “우수체인사업자”로 하고, 제22호는 현행대로 하고, 제23호를 “도시가스사업자라 함은 「도시가스사업법」 제2조 규정에 의한 일반도시가스사업을 하는 사람을 말한다.”로 신설하고,
- 제5조제7호는 현행과 같이 하고, 제8호는 제9호로 변경하고, 제8호에 “「도시가스사업법」에 의한 가스공급시설 중 배관 및 정압기시설의 설치 비용에 대한 용자”를 신설한다.
- 제16조제16호는 현행대로 하고, 제17호는 제18호로 변경하고, 제17호에 “「도시가스사업법」에 의한 일반도시가스사업을 하는 사람”으로 신설한다.
- 제18조의 시장·군수를 “시장·군수(이하 “자금평가 기관”으로 한다)”로 수정한다.

(수정안 포함)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33조와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육성에 관한 법률」 제43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내에 소재하고 있는 중소기업 등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경기도중소기업육성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99. 12. 31, 2003. 9. 22, 2006. 3. >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중소기업”이라 함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을 말한다.
2. “지방중소기업육성계획”이라 함은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육성에 관한 법률」 제40조 및 제42조의 규정에 의하여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작성한 계획을 말한다.
3. “중소기업의 대기업협력사업”이라 함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 가. 중소기업자가 「중소기업의 사업영역보호 및 기업간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을 이양 받는 경우
 - 나. 중소기업자가 「중소기업의 사업영역보호 및 기업간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협력사업을 하는 경우<개정 2006. 3. >
4.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이하 “창업투자조합”이라 한다)”이라 함은 창업자에 투자하고 그 성과를 배분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조합으로서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조합을 말한다.<개정 '99. 4. 12, 2006. 3. >
5. “창업중소기업”이라 함은 중소기업을 설립한 날부터 7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를 말한다.<개정 '98. 6. 29, 2000. 10. 2>
6. “중소해외유통업체”라 함은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업체 중 도가 외국에 조성한 산업단지 내에서 생산된 제품을 현지 판매하는 도내 중소해외유통업체를 말한다.<개정 2003. 9. 22>
7. “산업단지”라 함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산업단지를 말한다.
8. “아파트형공장 건설사업승인을 받은 자”라 함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의2의 규정에 의한 사업승인·건축허가 등을 받아 아파트형공

장을 건설하는 자를 말한다.<개정 '97. 11. 10, '99. 12. 31, 2003. 9. 22>

9. “공장용지 임대사업자”라 함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기관과 입주계약을 체결한 임대사업자를 말한다.
<개정 2003. 9. 22>
10. 삭제<2006. 3. >
11. “시장정비사업시행자”라 함은 「재래시장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거 시장정비사업을 시행하는 사람을 말한다.<개정 2006. 3. >
12. “체인사업”이라 함은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의제5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을 말하며, “우수체인사업자”라 함은 동법 제17조 규정에 의한 우수체인사업을 하는 사람을 말한다.<개정 2006. 3. >
13. “상점가진홍조합”이라 함은 「유통산업발전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조합을 말한다.<개정 2006. 3. >
14. “중소기업의 기술개발 및 경영·판매 등을 종합 지원하기 위한 사업”이라 함은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육성에 관한 법률」 제49조 및 동법시행령 제63조 및 도 조례에 의하여 설립한 법인이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15. “금융기관 등”이라 함은 「은행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 및 「여신전문금융업법」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재정경제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신기술 금융회사를 말한다.<개정 2003. 9. 22>
16. “중소기업지원기관협의회”라 함은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육성에 관한 법률」 제49조 및 동법시행령 제62조의 규정에 의거 설치된 협의회를 말한다.
17. “공동창고건립사업자”라 함은 체인사업자·상업조합 또는 그 단체, 시장정비사업자, 3개 이상의 중소유통업체가 공동으로 창고를 건립하여 공동물류사업을 통한 물류비용을 절감하고자 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신설 '97. 11. 10】 <개정 2006. 3. >
18. “벤처기업”이라 함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서 정한 벤처기업을 말한다. 【신설 '97. 11. 10】
19. “관광업자”라 함은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호텔업, 외국인전용 관광기념품 판매사업자를 말한다. 【신설 '99. 4. 12】
20. 삭제<2006. 3. >
21. “벤처기업집적시설”이라 함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제5조제1항의 각호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춘 건축물을 말한다. 【신설 '99. 12. 31】
22. “실업대책”이란 실업자의 해소를 위한 고용창출 및 실직자의 직업훈련 등을 말한다. 【신설 '99. 12. 31】
23. “도시가스사업자”라 함은 「도시가스사업법」 제2조 규정에 의한 일반도시가스사

업을 하는 사람을 말한다. 【신설 2006. 3. 】

제3조(기금의 설치) ①도지사는 중소기업 등의 육성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지원하기 위하여 경기도중소기업육성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개정 '99. 12. 31, 2003. 9. 22, 2006. 3. >

②기금은 「지방재정법」 제3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입·세출예산 외로 처리할 수 있다.<개정 2006. 3. >

제4조(기금의 조성) ①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중앙행정기관, 도 및 시·군의 출연금<개정 '99. 12. 31>
2. 기금운용수익금
3.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의 예수금 및 출연금
4. 기타수입금<개정 '98. 6. 29>

②도지사 및 시장·군수는 제1항 제1호의 출연금을 매 회계연도마다 세출예산에 계상하여 출연할 수 있다.

제5조(기금의 용도) ①기금은 다음 각호의 1의 용도에 사용할 수 있다.<개정 '99. 12. 31, 2003. 9. 22, 2006. 3. >

1. 중소기업체에 대한 융자
2. 금융기관의 저리융자에 대한 이차차액의 보전
3. 기금의 운용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비
4. 경기신용보증재단에의 출연금 【신설 '99. 4. 12】 <개정 '99. 12. 31>
5.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기술투자조합과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의한 창업투자조합 및 「산업발전법」에 의한 기업구조조정조합에의 투자참여를 위한 출연금<개정 2000. 11. 24, 2003. 9. 22>
6. 벤처기업집적시설의 건립을 위한 출연금 【신설 '99. 12. 31】
7. 소규모창업 등 고용창출을 위한 사업 및 실직자에 대한 직업훈련비의 용자지원 【신설 '99. 12. 31】
8. 「도시가스사업법」에 의한 가스공급시설 중 배관 및 정압기시설의 설치비용에 대한 융자<개정 2006. 3. >
9. 기타 중소기업의 육성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의 지원 【신설 2000. 11. 24】

②기금은 제1항 각호에 명시된 용도와 중소기업의 육성을 위한 목적 외에는 사용

할 수 없다.<개정 '99. 12. 31, 2006. 3. >

제6조(기금의 관리·운용 등) ①기금은 도지사가 관리·운용한다.

②도지사는 기금을 제16조 제1항 각호의 용자대상을 구분·설정하여 처리하되, 유사한 사업은 통합 운영할 수 있다.

③도지사는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성된 기금을 제16조제1항 각호에 의한 용자 및 출연대상사업 상호간에 전용하여 사용할 수 있다. 다만 국비지원사업의 경우에는 중소기업청장과 사전협의를 하여야 한다.<개정 '98. 6. 29, '99. 12. 31>

④도지사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기금의 관리·운용과 관련한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금융기관,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중소기업진흥공단, 보증기관, 시·군 등에 위탁 또는 위임할 수 있다.<개정 '97. 1. 31, '99. 12. 31, 2006. 3. >

⑤도지사는 기금을 대출자금으로 운용하고자 할 때에는 모든 금융기관이 용자를 취급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기금관리 및 원활한 용자지원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일부 금융기관에 한하여 취급하게 할 수 있다.<개정 '97. 1. 13, '99. 4. 12>

⑥제4항의 규정에 의한 위탁은 협약에 의하며, 위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중소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의 예수·출연) ①제4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의 예탁금 및 출연금은 도지사가 중소기업진흥공단 이사장과 협약을 체결하여 자금을 예수 또는 출연받을 수 있다.

②기금을 중소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으로부터 예탁받을 때의 절차 및 조건에 관해서는 「재정투·용자특별회계법」에서 정한 내용을 준용한다.

제8조(자금의 차입) 도지사는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기금의 부담으로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할 수 있다.

제9조(용자계획의 공고 등) 도지사는 사업시행 전에 기금의 용도에 대한 세부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개정 '99. 12. 31>

제2장 중소기업육성기금심의위원회

제10조(심의위원회의 구성) ①도지사는 기금출연 또는 기금운용계획을 심의·결정하기 위하여 경기도중소기업육성기금심의위원회 (이하 “위원회”라 한다) 를 설치·운

영한다.<개정 '99. 12. 31, 2001. 10. 4, 2003. 9. 22>

②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99. 4. 12>

③위원장은 경제투자관리실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투자진흥관이 된다.<개정 '98. 9. 14, 2000. 2. 16, 2000. 10. 2>

④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로 하되,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각호개정 '99. 4. 12, '99. 12. 31>

1. 경기신용보증재단 이사장
2. 경기지방중소기업청 경영지원과장
3. 중소기업진흥공단 경기지역본부장
4. 경기도의회가 추천하는 경제투자위원회의 도의원 2인
5. 도내 상공회의소 회장 1인
6. 한국여성경제인협회 경기지회장
7. 기술평가전문가 2인 이내
8. 금융기관의 여신평가전문가 2인 이내
9. 기타 도지사가 위촉하는 자

⑤제4항에 규정된 위원중 제1호 내지 제3호 및 제6호(이를 “당연직위원”이라 한다)를 제외한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개정 '98. 6. 29, '99. 4. 12, 2000. 10. 2>

⑥위원회의 기능 및 운영에 관하여 기타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1조(위원회의 소집) ①도지사는 기금의 출연 또는 기금운용계획을 심의·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위원회를 소집할 수 있다.<개정 '99. 12. 31, 2001. 10. 4>

제12조(의결정족수) ①위원회의 의결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3조(실비변상 등) ①도 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회의 위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경기도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3장 기금의 관리·운용

제14조(기금관리공무원) ①기금의 효율적인 출납을 위하여 경제투자관리실장을 기금

운용관으로 하고, 기금관련 담당사무관을 기금출납원으로 한다.<개정 '98. 9. 14, '98. 11. 9, 2003. 9. 22, 2006. 3. >

②기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5조(결산 및 보고) ①도지사는 매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서와 기금결산보고서를 매 회계연도마다 도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98. 6. 29>

제16조(용자 및 출연대상 등) ①도지사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에게 기금을 용자할 수 있다.<개정 '98. 6. 29, '99. 12. 31, 2003. 9. 22, 2006. 3. >

1. 제2조제1호의 중소기업자로서 도지사가 정하는 업종을 영위하는 자<개정 '99. 4. 12, '99. 12. 31>
2.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3조, 제4조, 제7조 및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의 구조고도화사업을 추진하는 자<개정 2006. 3. >
3. 「중소기업의 사업영역보호 및 기업간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0조 및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의 대기업 협력사업을 추진하는 자<개정 2006. 3. >
4. 「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 의한 창업중소기업과 창업투자조합 및 벤처기업<개정 2006. 3. >
5. 삭제<'98. 6. 29>
6. 도가 외국에 조성하는 산업단지에 진출하는 도내 중소기업자
7. 제6호의 산업단지에서 생산하는 제품을 현지판매하는 도내 중소기업자
8. 「산업직접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아파트형공장건설사업 승인을 받은 자 또는 아파트형공장입주업체<개정 '98. 6. 29, '99. 12. 31, 2003. 9. 22>
9. 「산업직접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8조의2의 규정에 의한 산업단지 임대사업자<개정 2003. 9. 22>
10. 시장정비사업자(기존시장을 이전하여 재건축하는 사업자, 시장시설 개보수, 임시시장을 설치하는 사업자를 포함한다)<개정 2000. 10. 2, 2006. 3. >
11. 한국표준산업분류중 도·소매업 및 상품중개업자,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에 의한 대규모점포등록 대상이 아닌 중소기업의 시장, 편의점, 쇼핑센터의 개설자 또는 관리자의 점포시설 개선<개정 2000. 10. 2, 2006. 3. >

12. 시장정비사업자, 상점가진흥조합원, 우수체인사업자,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 67조3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사업협동조합원, 3이상 중소기업업자의 공동창고의 건립<개정 2000. 10. 2, 2006. 3. >
 13. 「유통산업발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전문상가단지 건립사업자 및 시설개선사업자<개정 2000. 10. 2, 2006. 3. >
 14. 중소기업의 기술개발 및 경영·판매 등을 종합지원하기 위한 사업자
 15. 지방중소기업육성계획에 의거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의 추진업체 <개정 2006. 3. >
 16. 소규모창업 등 고용창출을 위한 사업 및 실직자의 직업훈련을 위하여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또는 사업체 【신설 '99. 12. 31】
 17. 「도시가스사업법」에 의한 일반도시가스사업을 하는 사람<개정 2006. 3. >
 18. 기타 중소기업 육성을 위하여 도지사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개정 '99. 12. 31, 2006. 3. >
-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용자대상자중 중소기업업을 영위하는 자는 공장등록을 필 하여야 한다. 다만, 관계법령에 의거 공장등록이 의제되는 자는 공장등록을 요하 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98. 6. 29, '99. 4. 12>
- ③제1항 각호 지원대상업체 또는 대상자의 세부지원기준·우선지원대상·지원범위 ·대출취급기한 등은 도지사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개정 '99. 12. 31>
- ④도지사는 기금을 지방중소기업육성계획에 의거 중소기업·벤처기업의 기술개발 지원 또는 투자자금의 조성을 위한 출연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다. 【신설 '99. 12. 31】
- ⑤도지사는 기금을 벤처기업집적시설 건립을 위한 출연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다. 【신설 '99. 12. 31】

제17조(용자조건 등) ①제16조 제1항 각호 규정에 의한 각 사업별 용자조건은 규칙으 로 정한다.<개정 '99. 4. 12, 2003. 9. 22>

-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용자금의 대출절차·이자불입 등은 기금관리자가 기금관리 를 위탁한 금융기관(이하 “기금관리은행”이라 한다)과 협의하여 정한다.<개정 '99. 4. 12>
- ③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저리용자에 따른 일반대출금리와 차액을 보전 하기 위하여 기금관리은행에 이자차액보전금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99. 4. 12>

제18조(용자신청) 제16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가 중소기업육성자금을 지원받고자 할 경우 용자신청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도지사는 금융기관이나 보증기관 또는 시장·군수(이하 “자금평가 기관”으로 한다)에게 신청의 접수를 위탁할 수 있다.<개정 '97. 11. 10, '99. 12. 31, 2000. 10. 2, 2003. 9. 22>

제19조(융자추천) ①제18조 단서의 규정에 의거 융자신청서를 접수받은 기관 중 자금평가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은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평가기준에 의거 평가한 후 업체별 우선순위를 정하여 도지사에게 융자대상업체를 추천하여야 한다.<개정 2000. 10. 2, 2006. 3. >

제20조(현지실사 및 평가) ①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융자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현지실사 및 사업의 타당성 등을 평가하여야 한다. 다만, 도지사가 현지실사 및 평가의 필요성이 없다고 인정하는 업체에 대하여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개정 '98. 6. 29>

②도지사는 현지실사 및 평가에 관한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전문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기준은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융자대상자별로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④삭제<2006. 3. >

제21조(융자승인 등) 도지사는 제18조 및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융자신청서 또는 추천서를 접수한 때에는 심사기준의 적합여부를 확인한 후 즉시 융자승인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개정 '97. 11. 10, '98. 6. 29, 2001. 10. 4>

제4장 보 칙

제22조(기금의 상환) ①출연금은 사업목적이 완료된 경우에는 이 기금에 귀속한다.

【신설 '99. 12. 31】

②융자금의 상환조건·상환지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3조(사후관리) ①도지사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자금을 지원받은 자에 대하여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실태를 조사하거나 이에 관련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개정 2000. 10. 2>

②도지사는 허위에 의하여 자금을 지원받았거나 지원자금을 사업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한 때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환수 등 필

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24조(변경사항의 통보 등) 용자금을 지원받은 업체는 업체의 명칭·대표자·소재지등 기업운영에 관한 변경사항이 발생한 경우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도지사와 용자받은 금융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25조(보고 등) ①기금관리업무를 위탁받은 금융기관은 기금에 관련된 운용상황을 매분기 15일까지 기금관리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97. 11. 10, '98. 6. 29>

②도지사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기금관리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에 대하여 관련자료를 제출하게 하거나 검사할 수 있다.

③기금관리업무를 위탁받은 금융기관은 자금지원업체의 부도발생·원금상환지체·사업장이전 등의 용자금 지원사항의 변경이 있는 때에는 지체없이 도지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6조(위탁수수료) 도지사는 제6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기금관리 및 운용의 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위탁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다.

제27조(전문기관의 협조) ①도지사는 전문기관이 협조를 받아 자금지원대상자에 대한 현지실사 또는 자금지원업체의 경영·기술지도 및 사업추진의 사후관리 등을 실시할 수 있다.<개정 '99. 12. 31>

②도지사는 이 경우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2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1995. 9. 25>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의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조성된 자금·업무위탁·협약·용자승인 등은 이 조례에 의하여 조성·체결·승인된 것으로 본다.

부 칙<1996. 3. 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6. 5. 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7. 1. 13>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존속기간) 이 조례는 2007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갖는다.

부 칙<1997. 11. 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8. 6. 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8. 9. 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8. 11. 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9. 4. 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9. 12. 31>

이 조례는 200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0. 2. 1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 칙<2000. 10. 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0. 11. 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1. 10. 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3. 9. 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6. 3. >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제2조제12호 및 제13호, 제16조제1항 중 제11호 및 제13호는 2006년 6월 24일부터 적용한다.

.....
신 · 구조문대비표(수정안 포함)

현 행	개 정 안	수 정 안
경기도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 운용조례	경기도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경기도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1조(목적)이 조례는 지방자치 법 제133조와 지역균형개발및 지방중소기업육성에 관한 법률 제43조 및 중소기업의구조개 선과재래시장활성화를위한특 별조치법 제3조의 규정에 의 하여 도내에 소개하고 있는 중소기업의 건전한 육성을 위 하여 경기도중소기업육성기금 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는데 필요한 사 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 다.	제1조(목적) 「지방자치 법」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 중소기업육성에 관한 법률」 <삭제>	제1조(목적) 「지방자 치법」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육성에 관한 법 률」 <삭제> 중소기업 등의
제2조(정의)(생략) 1~3. (생략) 가.(생략) 나. 중소기업자가 중소기업의 사업영역보호및기업간협력증 진에관한법률 제12조의 규정 에 의한 지정계열화품목을 생 산하는 경우	제2조(정의)(현행과 같음) 1~3. (현행과 같음) 가.(현행과 같음) 나. 「중소기업의 사 업영역보호 및 기업간 협력증진 에 관한 법률」 협력사업 을	제2조(정의) (개정안과 같음)

현 행	개 정 안	수 정 안
<p>4.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이하 “창업투자회사”라 한다)”라 함은 창업자에 대하여 투자하는 것을 주된 임무로 하는 회사로서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소기업청에 등록된 회사를 말한다.</p> <p>5~9. (생략)</p> <p>10. “구조개선지원계획”이라 함은 중소기업구조개선과재래시장활성화를위한특별조치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지사가 수립한 계획을 말한다.</p> <p>11. “시장재개발·재건축사업자”라 함은 다음 각목의 1호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p> <p>가. 기존재래시장 등의 건축물을 철거 또는 증개축하여 현대식시장으로 재개발·재건축하는 사업자</p> <p>나. 기존시장을 이전하여 재건축하는 사업자</p> <p>다. 시장의 영업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기존시설을 개보수하거나 공동시설을 신규로 설치하는 사업자</p> <p>라. 재개발·재건축대상시장 내의 입점상인이 재개발·재건축 기간 동안 영업을 계속할 수 있도록 임시시장을 설치하는 사업자</p>	<p>4.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이하 “창업투자조합”라 한다)”이라 함은 창업자에 투자하고 그 성과를 배분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조합으로서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조합을 말한다.</p> <p>5~9. (현행과 같음)</p> <p>10. <삭제></p> <p>11. “시장정비사업시행자”라 함은 「재래시장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거 시장정비사업을 시행하는 사람을 말한다.</p>	<p>11. (개정안과 같음)</p>

현 행	개 정 안	수 정 안
<p>12. “체인사업”이라 함은 <u>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체인사업을 영위하는 자</u>를 말한다.</p> <p>13. “상점가진홍조합”이라 함은 <u>유통산업발전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조합</u>을 말한다.</p> <p>14~16. (생략)</p> <p>17. “공동창고건립사업자”라 함은 <u>체인사업자·상업조합 또는 그 단체, 시장재개발·재건축사업자, 3개 이상의 중소유통업체가 공동으로 창고를 건립하여 공동물류사업을 통한 물류비용을 절감하고자 하는 사업자를</u> 말한다.</p> <p>18~19. (생략)</p> <p>20. “제조업관련 서비스업자”라 함은 <u>소기업및소상공인지원을위한특별조치법 제2조의 사업자로서 도지사가 정하는 업종의 사업자를</u> 말한다.</p> <p>21. (생략)</p> <p>22. “<u>실업대책</u>”이란 <u>실업자의 해소를 위한 고용창출 및 실직자의 직업훈련 등을</u> 말한다.</p>	<p>12. “체인사업”이라 함은 「<u>유통산업발전법</u>」 제2조제5호의 <u>규정에 의한 사업을</u> 말하며, “<u>체인사업자</u>”라 함은 <u>같은 법 제17조 규정에 의한 우수체인사업을 하는 사람을</u> 말한다.</p> <p>13. “상점가진홍조합”이라 함은 「<u>유통산업발전법</u>」 제18조의 <u>규정에</u> …………….</p> <p>14~16. (현행과 같음)</p> <p>17. ……………</p> <p>…<u>정비</u>…………</p> <p>……………</p> <p>……………</p> <p>……………</p> <p>……………</p> <p>……………</p> <p>……………</p> <p>18~19. (현행과 같음)</p> <p><삭제></p> <p>21. (현행과 같음)</p> <p>22. “<u>도시가스사업자</u>”라 함은 「<u>도시가스사업법</u>」 제2조 <u>규정에 의한 일반도시가스사업을 하는 사람</u>을 말한다.</p>	<p>12. “체인사업”이라 함은 「<u>유통산업발전법</u>」 제2조제5호의 <u>규정에 의한 사업을</u> 말하며, “<u>우수체인사업자</u>”라 함은 <u>같은 법 제17조 규정에 의한 우수체인사업을 하는 사람</u>을 말한다.</p> <p>13. (개정안과 같음)</p> <p>14~16. (현행과 같음)</p> <p>17. (개정안과 같음)</p> <p>18~19. (현행과 같음)</p> <p>21. (현행과 같음)</p> <p>22. “<u>실업대책</u>”이란 <u>실업자의 해소를 위한 고용창출 및 실직자의 직업훈련 등을</u> 말한다.</p> <p>23. “<u>도시가스사업자</u>”라 함은 「<u>도시가스사업법</u>」 제2조 <u>규정에 의한 일반도시가스사업을 하는 사람</u>을 말한다.</p>

현 행	개 정 안	수 정 안
<p>제3조(기금의 설치) ①도지사는 <u>중소기업</u>의 육성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지원하기 위하여 경기도중소기업육성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p> <p>②기금은 <u>지방재정법 제29조제2호</u>의 규정에 의하여 세입·세출예산 외로 처리할 수 있다.</p>	<p>제3조(기금의 설치) ①……<u>중소기업</u> 등……………</p> <p>②……「<u>지방재정법</u>」 제34조제3항……………</p>	<p>제3조(기금의 설치) ①(개정안과 같음)</p>
<p>제5조(기금의 용도) ①기금은 <u>지방중소기업육성계획</u>에 따라 다음 각호의 1의 용도에 사용할 수 있다.</p> <p>1.~6.(생략)</p> <p>7. <u>소규모창업 등 고용창출을 위한 사업 및 실직자에 대한 직업훈련비의 용자지원【신설 '99. 12. 31】</u></p> <p>8. <u>기타 중소기업의 육성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의 지원</u></p> <p>②기금은 <u>중소기업의 육성 및 실업대책</u>을 위한 목적 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p>	<p>제5조(기금의 용도) ①…… <삭제>……………</p> <p>1.~6.(현행과 같음)</p> <p>7. 「<u>도시가스사업법</u>」에 의한 <u>가스공급시설 중 배관 및 정압기 시설의 설치비용에 대한 용자</u></p> <p>8. (현행과 같음)</p> <p>②…… 제1항 각호에 명시된 <u>용도와 중소기업의 육성</u>……………</p>	<p>제5조(기금의 용도) ①(개정안과 같음)</p> <p>1.~6.(현행과 같음)</p> <p>7. (현행과 같음)</p> <p>8. 「<u>도시가스사업법</u>」에 의한 <u>가스공급시설 중 배관 및 정압기시설의 설치비용에 대한 용자</u></p> <p>9. <u>기타 중소기업의 육성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의 지원</u></p> <p>②(개정안과 같음)</p>
<p>제6조(기금의 관리·운용 등) ①~③(생략)</p> <p>④도지사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기금의 관리·운용과 관련한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금융기관·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에 <u>위탁할 수 있다.</u></p>	<p>제6조(기금의 관리·운용 등) ①~③(현행과 같음)</p> <p>④……………, <u>중소기업진흥공단, 보증기관, 시·군 등에 위탁 또는 위임할 수 있다.</u></p>	<p>제6조(기금의 관리·운용 등) ①~③(현행과 같음)</p> <p>④(개정안과 같음)</p>
<p>제14조(기금관리공무원) ①기금의 효율적인 출납을 위하여 <u>경제투자관리실장</u>을 기금운용관으로 하고, <u>자금지원담당</u>을 기금출납원으로 한다.</p>	<p>제14조(기금관리공무원) ①……… ………, <u>기금관련 담당사무관</u>……………</p>	<p>제14조(기금관리공무원) (개정안과 같음)</p>

현 행	개 정 안	수 정 안
<p>제16조(용자 및 출연대상 등)</p> <p>①도지사는 지방중소기업육성 계획에 의거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에게 기금을 융자할 수 있다.</p> <p>1. (생략)</p> <p>2. <u>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 제3조, 제4조, 제5조 및 제7조의</u>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의 구조고도화사업을 추진하는 자</p> <p>3. <u>중소기업의사업영역보호및기업간협력증진에관한법률 제9조, 제10조 및 제18조의</u>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의 대기업 협력사업을 추진하는 자</p> <p>4. <u>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u> 의한 창업중소기업과 창업투자회사 및 벤처기업</p> <p>5~9. (생략)</p> <p>10. 시장재개발·재건축사업자 (기존시장을 이전하여 재건축하는 사업자, 시장시설 개보수, 임시시장을 설치하는 사업자를 포함한다.)</p> <p>11. 한국표준산업분류중 도·소매업 및 상품중개업자, <u>시장, 중소백화점, 쇼핑센터의</u> 개설자 또는 관리자의 점포시설 개선</p> <p>12. 시장재개발·재건축사업자, 상점가진흥조합원, <u>지정체인사업자,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67조3의</u>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사업협동조합원, 3이상 중소기업·유통업자의 공동창고의 건립</p>	<p>제16조(용자 및 출연대상 등)</p> <p>①도지사는 <삭제>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에게 기금을 융자할 수 있다.</p> <p>1. (현행과 같음)</p> <p>2.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3조, 제4조, 제7조 및 「중소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9조……………</p> <p>3. 「중소기업의 사업영역보호 및 기업간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0조 및 제12조……………</p> <p>4. 「중소기업창업 지원법」……………<u>조합</u>……………</p> <p>5~9. (현행과 같음)</p> <p>10. ……<u>정비</u>……………</p> <p>11. ……………,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에 의한 대규모점포등록 대상이 아닌 중소기업·시장·편의점, ……………</p> <p>12. ……<u>정비</u>……………, <u>우수</u>……………, 「중소기업 협동조합법」……………</p>	<p>제16조(용자 및 출연대상 등)</p> <p>(개정안과 같음)</p> <p>12.~15. (개정안과 같음)</p>

현 행	개 정 안	수 정 안
<p>제20조(현지실사 및 평가추천) ①~③(생략) ④제18조의 단서규정에 의하여 용자신청서를 접수받은 자 중 도지사가 자금평가기관으로 정 한 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한 후 업 체별 지원우선순위를 정하여 도지사에게 추천하여야 한다.</p>	<p>제20조(현지실사 및 평가<삭제>) ①~③(현행과 같음) ④<삭제></p>	<p>제20조(현지실사 및 평가) (개정안과 같음)</p>